

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(제13조제2항관련)

종 류	교 육 대 상	교육시간
1. 기본교육	가.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.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	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
2. 전문교육	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라. 이 영 제11조에 해당하는 자	매년 12시간 이상
3. 관리교육	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 근무하는 검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기술사 나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한 자	매년 12시간 이상